

제 271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3.6.13.)

조례안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혜진]

목 차

1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	1
2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3	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15
4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5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6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7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9
8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9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10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 지원계획 동의안	88
11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92
12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98
13	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4
14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4
15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0
16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33
17	장애인일자리사업(도자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9
18	장애인이동목욕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145
19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51
20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7

거창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3. 6. 2.

나. 발 의 자: 이홍희 의원 대표발의

(이홍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의원 발의)

다. 회부일자: 2023. 6. 2.

2. 제안이유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021. 7.)에 따라 거창군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 2, 3, 4조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05. 09. ~ 05. 15.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해당 조례는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거창군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 군수는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 주민참여 방법활동, 각종 생활안전 분야, 여성·청소년, 교통,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발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경찰법)」

[시행 2023. 2. 16.] [법률 제19023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交通安全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1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제2조(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
2.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
3.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4.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할 것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자치경찰사무	범위
1. 지역 내 주민의 생활 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1)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 2)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3)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나.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1)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2)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다.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1)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2)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1)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2)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대응 활동 3)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4)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 5)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6) 학교폭력의 근절·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7)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8)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p>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2)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p>바.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2)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3)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p>2.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p>	<p>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2)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관리·운영 등
	<p>나.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2)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3)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p>다.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2)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p>라.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관리 2)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p>및 지도</p> <p>마.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p>	<p>1)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p> <p>2)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등</p> <p>3)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기관 합동 점검</p> <p>4)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p> <p>5)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p> <p>6)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p>
	<p>바.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p>	<p>1)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p> <p>2)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p> <p>3)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p> <p>4)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p> <p>5)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p> <p>6)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p>
<p>3.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p>	<p>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p> <p>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p>	

□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치 순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주민생활안전, 범죄예방을 위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방법의식이 투철한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및 지역안전예방 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민 조직(여성자율방범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20.7.1. 2021.9.29.)
2.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읍·면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외국인 명예경찰대”란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 질서유지 및 방법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거창경찰서에 등록되어 방법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해 온 자율방법대와 연합회, 외국인 명예경찰대로 한다.(2020.7.1.)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호전부개정 2020.7.1.)

1. 방법활동에 필요한 경비
 2. 방법초소 개선사업
 3.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요구와 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2020.7.1.)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2020.7.1.)

제6조삭제<2021.9.29.>

제7조(교육) 군수는 필요시 거창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2020.7.1.)

제8조삭제<2020.7.1.>

제9조삭제<2020.7.1.>

부칙(제정 2015.9.23. 조례 제22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법대 및 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3. 6. 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3. 6. 2.

2. 제안이유

-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주시설 운영,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용어 정비함(안 제2조)
- 나. 후생복지시설 운영 대상 확대함(안 제6조)
 - 1) 무주택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주시설
 - 2) 그 밖에 군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다. 후생복지 사업의 현행화 및 확대함(안 제7조)
 - 1) 장제용품 등 장제비 지원 ⇒ 장제비 지원
 - 2)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신설
 - 3) 출산축하 기념품 지원 ⇒ 출산·생일 격려품 지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무원법」 제77조
- 2)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50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4. 19.~5. 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해당 조례는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주시설 운영, 휴양 시설 이용료 지원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확대 시행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무주택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주 시설을 신설하였으며, 후생복지사업으로 장제비 지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출산·생일 격려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 시행

나. 관련조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6조·제7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세출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군비	50	255	255	255	255	1070

3. 향후 계획

가. 후생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나. 후생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2024년 본예산 편성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1차연도(2023년)

가. 무주택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주시설

1) 국유재산 사용료, 운영 및 소파 보수비 50백만원

2. 2차연도(2024년~)

가. 무주택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주시설

1) 국유재산 사용료, 운영 및 소파 보수비 13백만원

나. 소속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210백만원

다. 소속직원 생일 격려품 지원 32백만원

작성자 행정과장 권 해 도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7. 삭제 <2013. 6. 21.>

8. “운영기관의 장”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영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1. 휴직 중인 공무원
-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4. 20.>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거창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3. 6. 2.

나. 발 의 자: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표주숙,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의원 발의)

다. 회부일자: 2023. 6. 2.

2. 제안이유

- 행정기관 민원실의 설치·운영,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시간의 연장,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민원소통과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05. 30. ~ 06. 05.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해당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 방법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운영시간을 단축, 연장,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거창군에서는 점심시간 교대근무와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은 각 행정기관의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민원실의 운영) ①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영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민원의 효율적인 접수·처리와 민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관 민원의 성격·접수 형태, 방문 민원인 수 등을 고려하여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단축·연장·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단축·연장·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시간을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하며, 운영시간의 단축·연장·변경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외의 장소에 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설치 장소·목적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종류의 민원만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훈령·예규·고시 등(법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인 경우에는 내부규정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3. 6. 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3. 6. 2.

2. 제안이유

-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 지원 신청 및 결정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정함(안 제7조)
- 마. 사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3,000천원 추경 편성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4. 28. ~ 5. 1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자치법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군수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치료와 상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민원인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한 의료비·약제비 지원

나. 관련 조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원(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 연도 (2023년)	2차 연도 (2024년)	3차 연도 (2025년)	4차 연도 (2026년)	5차 연도 (2027년)	합계
군비	의료비·약제비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의료비·약제비 지원

가. 1차 연도: 300천원 X 10명 = 3,000천원

나. 2차~5차 연도: 300천원 X 10명 = 3,000천원

작성자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 관련법령 발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8.(생략)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

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7. (생략)

-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3. 6. 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3. 6. 2.

2. 제안이유

-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상생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인용 법령 등 정비함(안 제명·제1조·제5조·제9조의3)
 - 1) 인용 법령 변경: 「식품산업진흥법」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 띄어쓰기 및 약칭, 실효된 조문 삭제
- 나.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함(안 제9조의2)
(현행) 2022. 12. 31. ⇒ (변경) 2023. 12. 31.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5. 8. ~ 5. 3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3호에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면 3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 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례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생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 해주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 건축물 임대료를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1년 연장하였음.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으로 세입 한시적 감소
- 나. 관련 조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안 제9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나. 2022년 세입 감소: 약 200만원

재무과장 윤 광 식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2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

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카.(생 략)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14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⑥ (생략)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3. 6. 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3. 6. 2.

2. 제안이유

-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압류하여 매각할 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제15조)
 - 1) 조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 ⇒ 제30조
 - 2) 용어: 주민세 재산분 → 주민세 사업소분
- 나.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정함(안 제3조~제6조)
 - 1) 전문매각기관의 요건, 신청, 선정, 선정 취소
- 다.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를 정함(안 제7조~제13조)
 - 1) 매각대행 의뢰와 압류재산의 인도

- 2)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의뢰, 협의사항, 매각대행 해제요청
- 3) 매각재산 인도, 매각대금 수령, 매각대금 등의 배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0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
- 2) 「지방세법」 제74조, 「지방세기본법」 제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4. 21. ~ 5. 1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에 따르면 예술품등을 매각할 때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7항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해당 조례는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압류하여 매각할 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전문 매각기관의 요건, 신청, 선정, 선정 취소와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를 신설하였음.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3. 4. 1.] [법률 제19231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5조(채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납액에 대하여 채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채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채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채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3. 4. 1.] [대통령령 제33368호, 2023. 3. 31., 일부개정]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여 공보 및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2. 국세청장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에 따라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문매각기관은 제5항에 따라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1조의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1.] [행정안전부령 제391호, 2023. 3. 31., 일부개정]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3. 18.>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2. 3. 18.>

수수료(제73조의8 관련)

1. 매각 수수료

매각 수수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공매진행단계별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최저 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구분	기준금액	공매진행단계	수수료율	최저수수료
가. 법 제85조제1항 또는 법 제95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납부세액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나. 매각대행 의뢰가	채납액 또는 매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해제된 경우	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0.9% 1.2%	18만원 24만원
다.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해당 매각금액	-	3.0%	30만원
라.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매수대금	-	1.2%	24만원

비고:

1.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2. 동일한 채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을 한도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되거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보전 수수료

보전수수료는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29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2023. 3. 14.>

1.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4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2023. 3. 14.>
-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종 담배의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며, 사업소 등에 대하여 부과하던 종전의 균등분의 일부를 사업소분으로 이관하는 등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이하생략~

◇ 주요내용

가. (생략)

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함(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제81조 및 제83조).

1)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던 균등분의 내용을 사업소분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7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13. (생략)

② (생략)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3. 6. 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3. 6. 2.

2. 공유재산관리계획

① 2023년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 제안이유

- 주차난이 열악한 주택가 지역에 자투리땅과 단독주택, 나대지 등을 활용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위 치 : 거창읍 상림리 31-46번지 등 6필지
- 취득면적 : 토지 1,463㎡ / 주택 117㎡
- 소요예산 : 1,800백만원 정도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예상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적				
계				1,463	1,537,739			
취득	주택	상림리 31-46	대	274	379,983	2023.7.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취득	토지	상림리 31-47	대	148	189,431			
취득	주택	중앙리327-9,329-1,329-11	대	392	326,230			
취득	토지	중앙리 328-10	대	139	198,395			
취득	토지	중앙리 324-14	답	275	239,250	미정		
취득	토지	중앙리 324-8	답	235	204,450			

※ 예상가격 : 가감정평가 / 토지(공시지가×면적×2), 건물(개별주택가격)

다. 추진경과

- 2023. 1. ~ 2. : 2023년 1차 단독주택(나대지) 매입 공고·접수
- 신청현황 : 24개소 38필지
- 2023. 4. : 매입부지 선정 심의

라. 향후계획

- 2023. 5. ~ 6. :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감정평가
- 2023. 6. ~ 7. : 보상협의
- 2023. 8. : 대상지 실시설계 용역
- 2023. 9. ~ 10. : 착공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주택가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흡수로 주차난 해소 및 양방향 불법 주차 감소로 차량 교행 원활
-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대비 조성 기간 단축 및 예산 절감

3. 관련법규 및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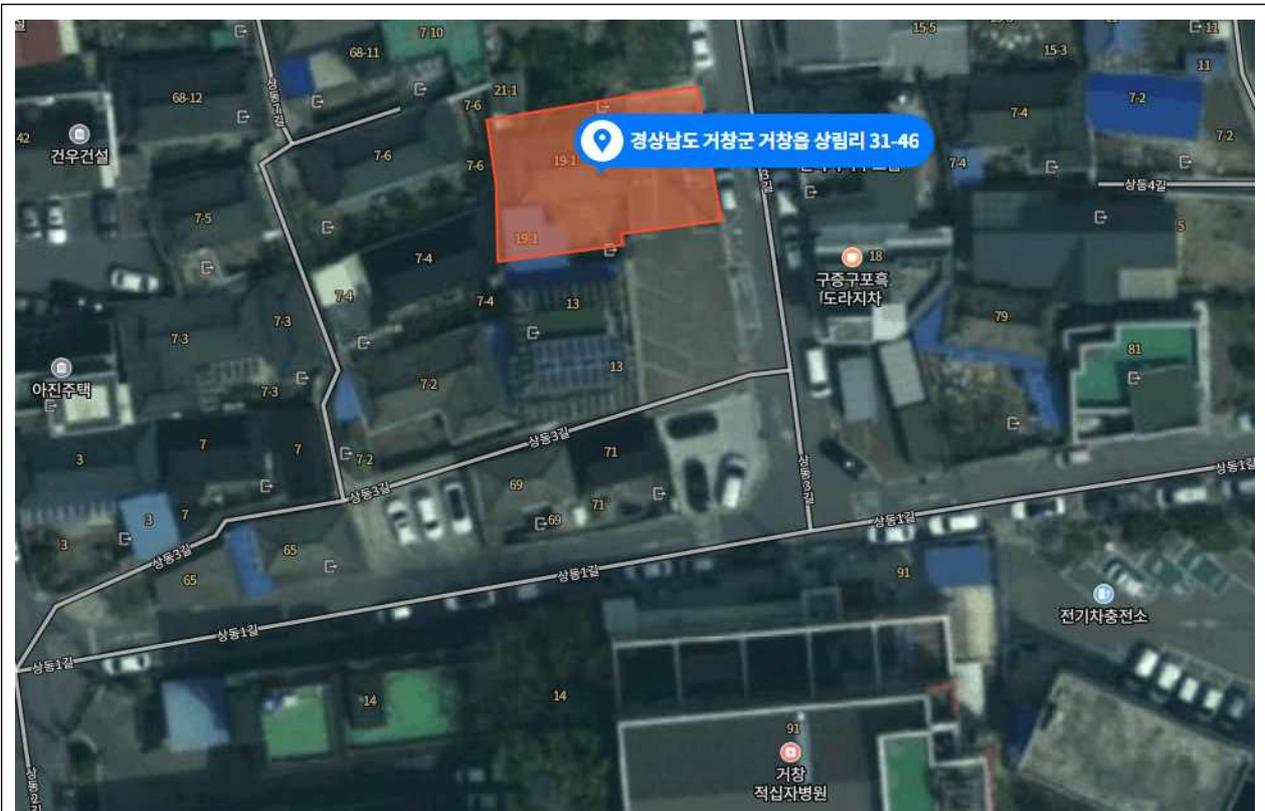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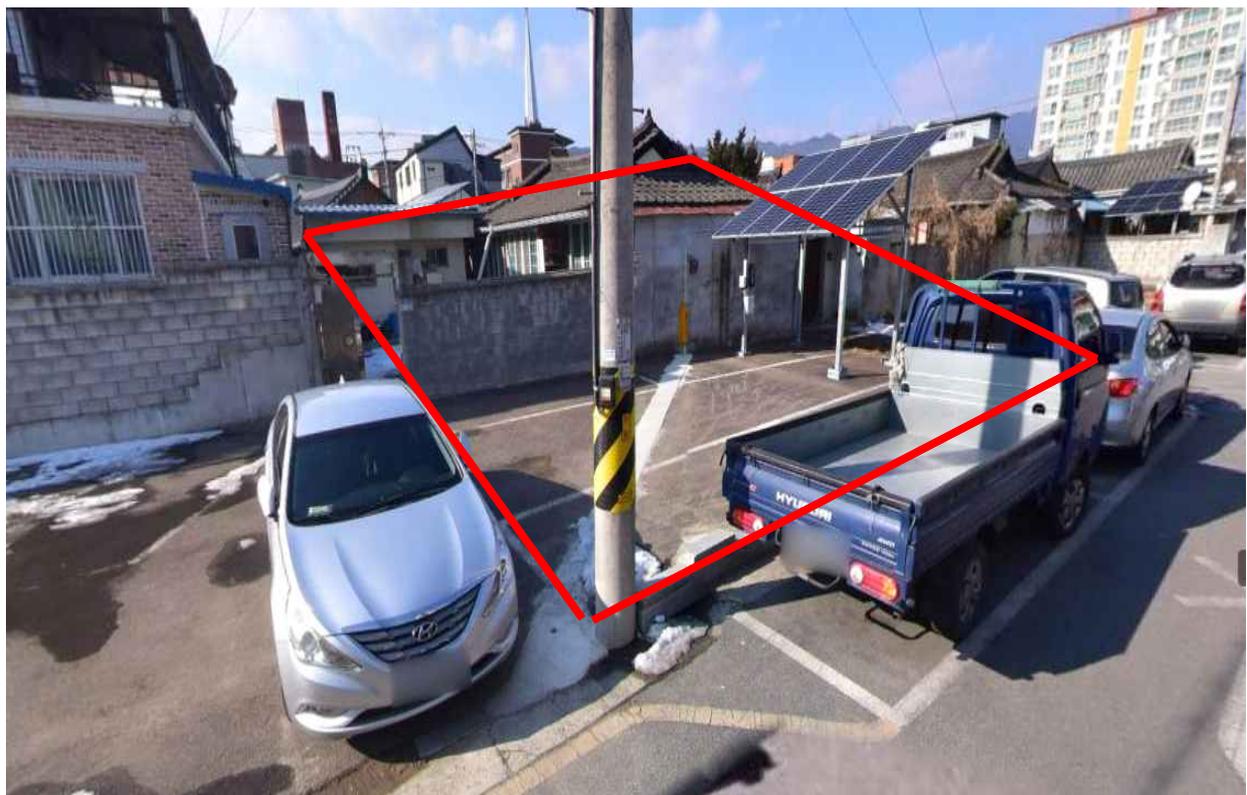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황



위치도 및 현장사진(상림리 3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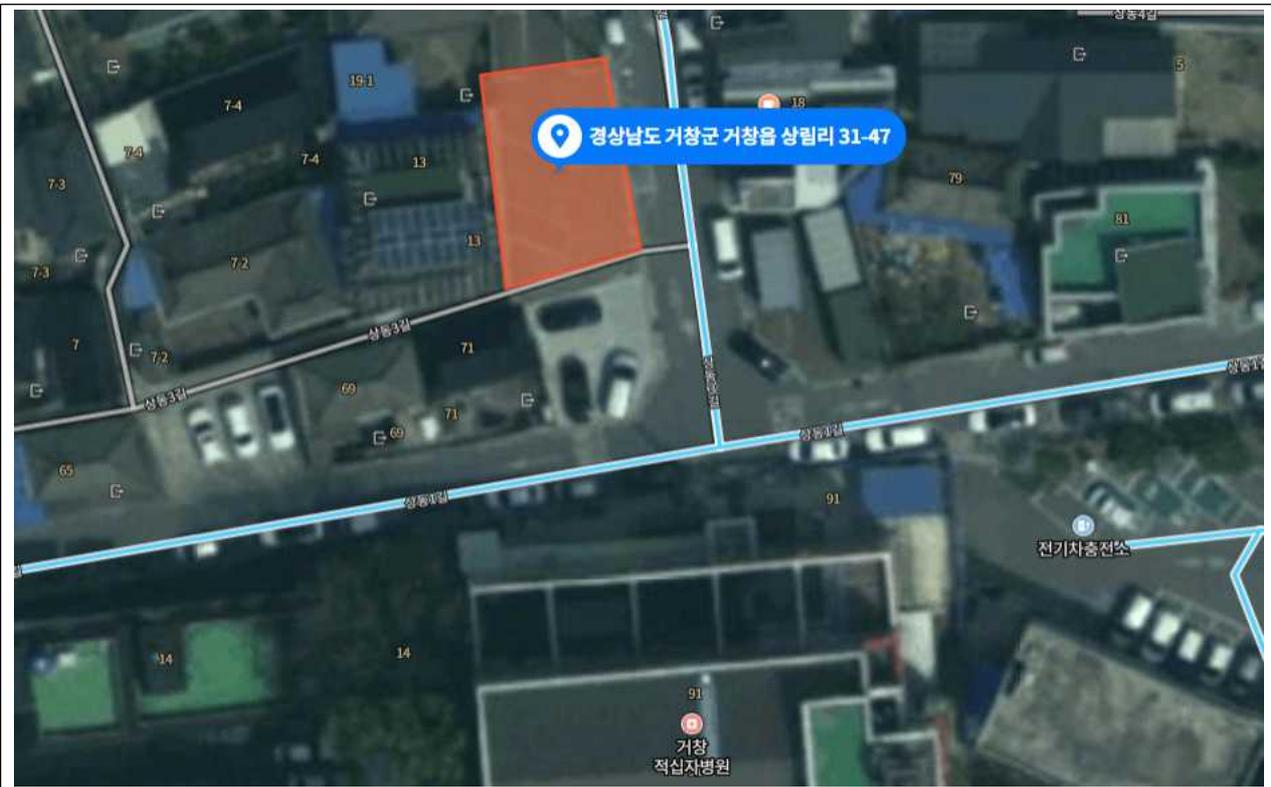


위치도(상림리 31-46)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상림리 3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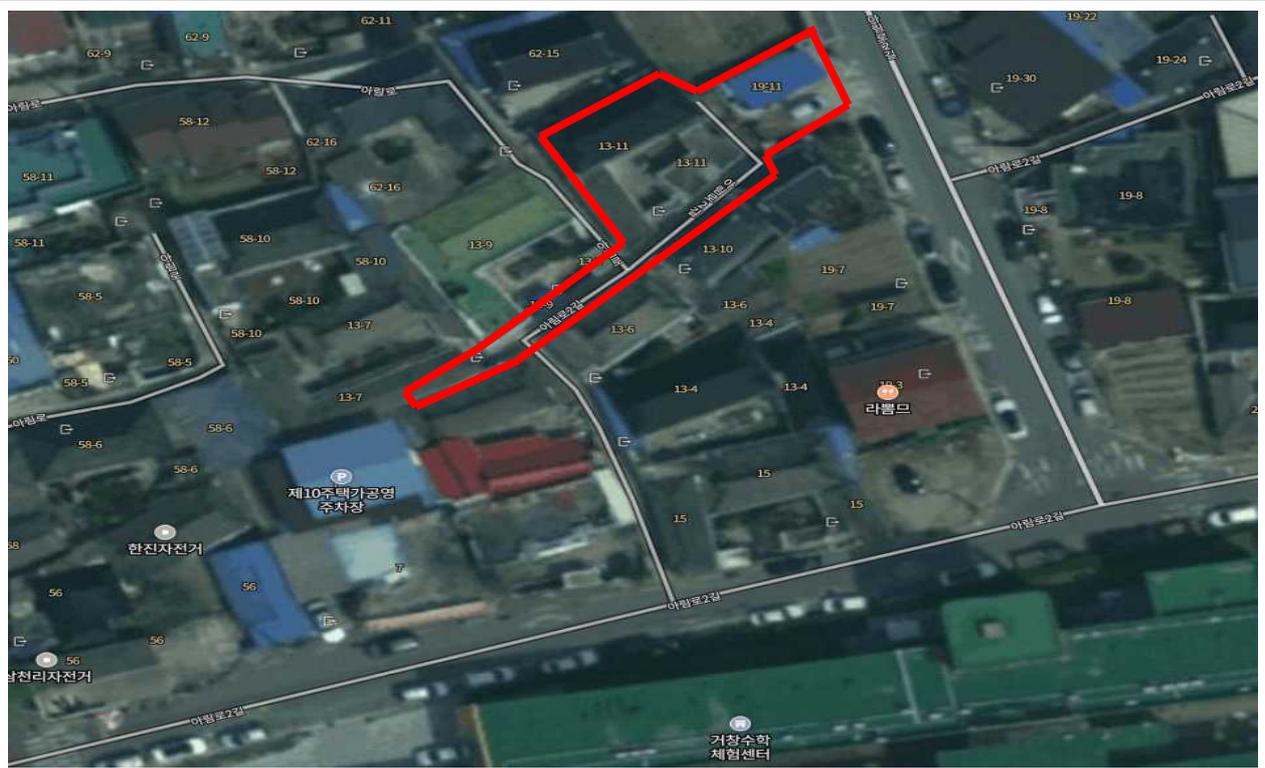


위치도(상림리 31-47)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중양리 327-9, 329-1, 329-11)



위치도(중양리 327-9, 329-1, 329-11)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중앙리 328-10)



위치도(중앙리 328-10)



현장사진

3. 검토의견

- 해당 관리계획은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계획으로 면적은 1,463m², 예상가격은 15억원 정도임.
- 위치는 적십자병원 후문 쪽으로 422m², 중앙리 거창초등학교 뒤편으로 392m², 중앙리 짱구네 분식 옆 649m²임
-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주택 밀집 지역 구도심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② 대동리 회전교차로 주변 건축물(화장실) 설치사업

1. 제안이유

- 대동리 회전교차로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건축물(화장실 설치, 지중화 변압기 이설) 및 주민 쉼터 공간을 설치하여 회전교차로 주변 경관개선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명 : 대동리 회전교차로 주변 건축물 설치사업
- 위치 : 거창읍 대동리 837-1번지
- 사업비 : 1,000,000천원
- 토지매입 708,000천원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m², 천원)

지 번	지목	면 적		공시지가	예상가격	비 고
		공부상	매입			
거창읍 대동리 837-1번지	대	118	118	1.960	708,000	

※ 예상가격 : 가감정평가액 708,000원

다. 향후계획

- 2023. 5. :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
- 2023. 6. : 부지 매입
- 2023. 9. ~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라. 기대효과

- 대동리 회전교차로 주변 화장실 및 주민쉼터 설치로 경관개선 및 주민 편의 제공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참조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거창읍 대동리 837-1)



현 장 사 진

3. 검토의견

- 대동리 회전교차로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고, 지중화 변압기를 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위치는 대동리 837-1번지이고, 면적은 118m², 예상가격은 7억 800만원으로 평당 2천만원 정도 예상됨.
- 해당 지역은 병의원과 약국이 밀집해 있고, 장날에는 상권이 형성되는 곳으로 유동인구가 많으며, 상인과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화장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곳으로 판단됨

③ 신원면 농산물직판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1. 제안이유

- 감악산 별바람언덕 방문객 및 클럽D 골프장 방문객 대상으로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하고,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농산물직판장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위 치 : 신원면 덕산리 237번지 외 1필지
- 면 적 : 1,824㎡
- 사업기간 : 2023. 5. ~ 12.
- 사 업 비 : 576,331천원
 - 부지취득 : 126,331천원(토지 가감정 평가액 기준)
- 내 용 : 농산물직판장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 및 시설물 신축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공시지가)	취득사유	비고
계	2필지		1,824			
취득	신원면 덕산리 237	답	489	8,740	농산물 직판장 조성	
취득	신원면 덕산리 248	답	1,335	8,740		

다. 추진경과

- 토지소유자 사전 협의 : 2022. 6.
- 농산물직판장 조성 관련 사전검토 : 2022. 12.
- 취득재산 감정평가 : 2023. 1.

라. 향후계획

- 토지보상협약 : 2023. 5.
- 추경예산 편성(토지매입, 건축) 및 행정절차 이행 : 2023. 9.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3. 11.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4. 2. ~ 6.

마. 기대효과

- 감악산 및 클럽D 골프장 탐방객의 만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우수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신규 판로 개척

3. 관련법규 및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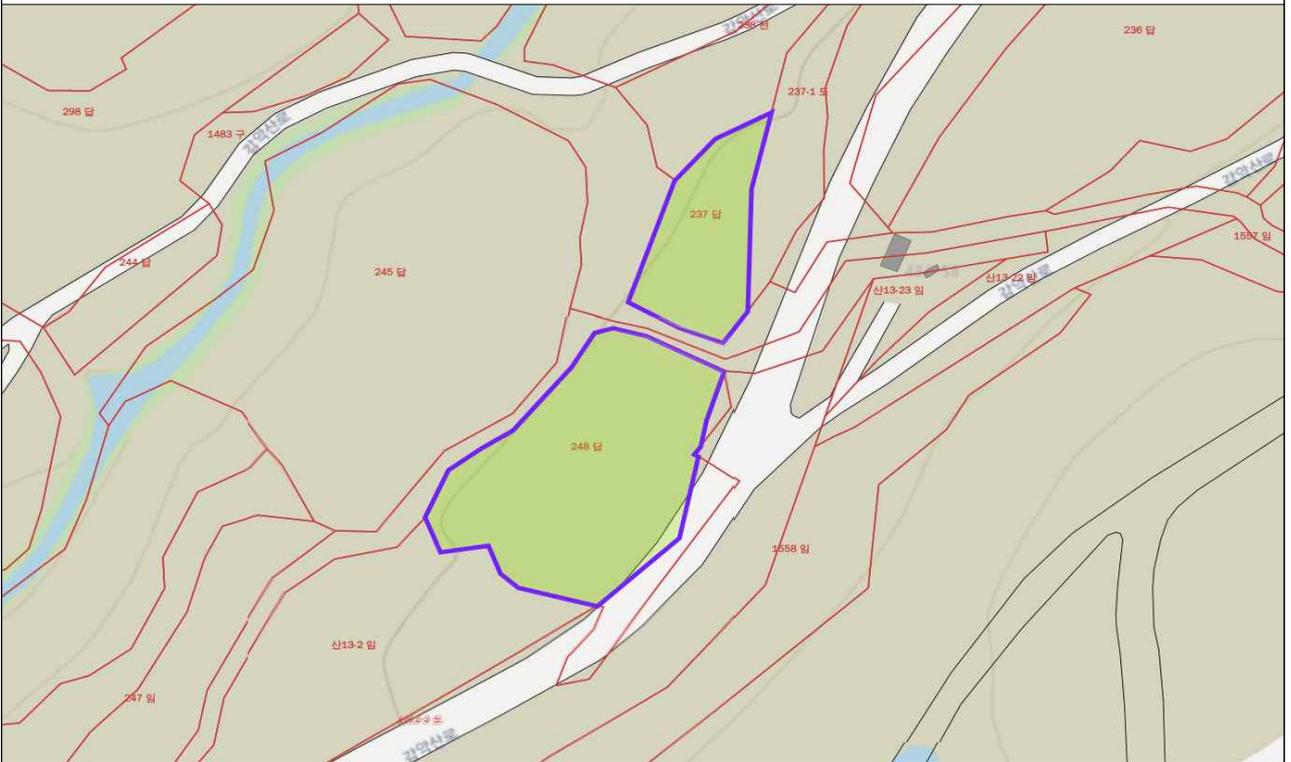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참조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신원면 덕산리 237 등 1필지)



지 적 도



현 장 전 경

3. 검토의견

- 감악산 별바람언덕 방문객과 클럽D 골프장 고객을 대상으로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대상지는 신원면 덕산리 237, 248번지이며, 면적은 1,824㎡, 부지매입 예상 가격은 1억 2천만원 정도이고, 총 사업비는 5억 7천만원이 예상됨.
- 농산물직판장을 조성하여 농특산물을 판매한다면 농가소득은 기대할 수 있으나, 감악산과 클럽D 방문객이 주요 고객인 만큼 판매 농특산물의 품질과 가격, 구매 의향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 보임.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3. 6. 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3. 6. 2.

2. 제안이유

- 신입생 유치를 위한 인구증가와 승강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대학교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 추가에 따른 제명 및 목적 정비(안 제명·제1조)
- 나. 호 삭제 등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3조)
- 다. 등록금 지원을 정함(안 제4조)
 - 1) 목적: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
 - 2) 범위: 수업료 및 입학금
 - 3) 대상: 군에 주소를 둔 대학 입학생 및 재학생이고 성적 등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라. 등록금의 지원신청, 중복지원 제한을 정함(안 제5조·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300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5. 10. ~ 5. 3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해당 조례는 한국승강기대학교 신입생 유치와 승강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 우선 조례 제명을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로 변경하여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띠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기존 조례 제4조에서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선언적 불필요한 규정에 불과하여 삭제하였으며,
- 덧붙여, 다른 법률에 적용받는 사항과 중복된 내용도 모두 삭제하고, 등록금 지원, 지원신청, 중복지원 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한국승강기대학 재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시행 등
- 나. 관련조문: 등록금 지원(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세출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군비	314	628	628	628	628	2,826

3. 향후 계획

- 가. 한국승강기대학 재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한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 나. 한국승강기대학 재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한 2024년 본예산 편성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1차연도(2023년)

- 가. 신입생 등록금 지원: 314백만원

2. 2차연도(2024년~)

- 가. 신입생 및 재학생 등록금 지원: 628백만원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이 정 희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12호, 2022. 2. 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란 규제특례를 통하여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

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구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11.] [법률 제19333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일: 2023. 10. 12.] 제7조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4. 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기한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제출지연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삭감금액은 해당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 4.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정산보고서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시행일: 2023. 10. 12.] 제17조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9호, 2023. 5. 16., 일부개정]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

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시행 2023. 1. 2.] [행정안전부예규 제236호, 2022. 12. 28., 일부개정.]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다.

제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만)을 반납받아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지방보조사업 등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지방보조금 규모가 3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4.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⑤ 국비 매칭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집행점검을 실시한 경우 이 기준에 따른 집행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검증보고서의 제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검증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12조(사용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

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지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4. 20.>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7. 7., 2022. 4. 20.>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

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5. 7. 20.>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0.>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0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 의견 18-0181

질의제목 :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장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성남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관련문서 : 경기도 성남시 교육청소년과- (2018. 8. 30.)

1. 질의요지

성남시장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성남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견

성남시장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성남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보조금 지출의 내용, 성남시의 재정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시의 판단에 따라 조례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이 사안에서는 성남시장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성남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성남시장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성남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함)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함)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업”과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업료, 입학금 그 자체에 관한 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중 시·도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수업료, 입학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학생 자녀를 둔 주민들의 수업료, 입학금 등에 관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형성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참조)인바, 이 사안에서 성남시장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성남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무는 성남시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소관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성남시장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성남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수 없는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 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 사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무에 해당할 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나 같은 조 제8항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사업”과는 관련이 없으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참조), 해당 지원 사무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입니다.

따라서, 성남시장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성남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보조금 지출의 내용, 성남시의 재정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시의 판단에 따라 조례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판결(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판시사항】

- [1] 수업료, 입학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 [2]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3] 화천군의회가 의결한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화천군수가 도의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군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여 확정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재량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판결요지】

- [1] 수업료, 입학금 그 자체에 관한 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에 해당하나, 수업료, 입학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학생 자녀를 둔 주민의 수업료, 입학금 등에 관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형성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 및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라)목]에 해당되는 사무이다.

[2] 헌법 제117조 제1항 과 지방자치법 제22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화천군의회가 의결한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화천군수가 도의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군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여 확정된 사안에서, 수업료, 입학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속하고, 이러한 사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업료 등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위 조례안 제4조는 군수에게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에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등 관계 법률과 조례안의 규정 내용 및 위 조례안에 따른 교육비 지원 사무에 들 비용이 화천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위 조례안 제6조 제3항이 교육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로 하여금 교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재량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원 고】 화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재기 외 2인)

【피 고】 화천군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호)

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취지】

피고가 2012. 1. 13.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6. 【이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호증의 1, 2 내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12. 15.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2011. 12. 19.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2012. 1. 2. 이 사건 조례안은 도의 자치사무에 관한 것으로 군의 지방의회인 피고가 도의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상 이를 집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3.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 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

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촌지역 특별법’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 여건의 기회 균등화와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한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여(제4조), 고등학교 학생들이 분기별로 납입하는 수업료와 입학 시 납부하는 입학금을 지원하는 것(제3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례안의 위법 여부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수업료, 입학금 지원 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8조 제1항 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조례안은 도의 사무인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군의 조례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업료, 입학금 그 자체에 관한 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수업료, 입학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학생 자녀를 둔 주민들의 수업료, 입학금 등에 관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형성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 및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라목)에 해당되는 사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업료, 입학금 지원 사무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지방재정법(2011. 8. 4. 법률 제10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이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에 반하여 개인에게 공금 지출을 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사건 조례안에 규정된 수업료, 입학금 지원 사무가 시·군·자치구의 자치사무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농어촌지역 특별법 제23조 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공금 지출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 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고, 같은 조 제6항 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할할 수 없는 시·군·자치구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인바(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추84 판결 참조), 이 사건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수업료, 입학금 지원 사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 이 규정하는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또는 같은 조 제6항 이 규정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3조 를 위반할 여지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의 수업료, 입학금 지원 행위를 기속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재량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을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추77 판결 등 참조).

농어촌지역 특별법 제23조 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조례안은 “교육비 지원 대상은 화천군에 보호자와 학생이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한 학생으로 한다(제4조 본문).”, “군수는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교육비를 지급한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수업료, 입학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속하고, 이러한 사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 특별법 제23조 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수업료 등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안 제4조는 교육비 지원대상을 ‘화천군에 보호자와 학생이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함께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한 학생’도 규정함으로써 원고에게 교육비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일정한 재량권

을 부여하고 있는 등 관계 법률과 조례안의 규정 내용 및 이 사건 조례안에 따른 교육비 지원사무에 소요될 비용이 화천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례안 제6조 제3항이 교육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로 하여금 교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재량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예산 사정상 집행 불능인지 여부

원고는 화천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이 사건 조례안은 예산상 집행될 수가 없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조례안으로 수업료, 입학금 지원사무에 소요될 비용은 원고 주장에 의하면 연 143,950,000원인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화천군의 2012년 수입 예산 총액은 182,955,32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화천군 예산의 규모와 이 사건 조례안으로 소요될 비용을 비교하면 이 사건 조례안이 예산상 집행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례안의 시행으로 지방재정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검토의견 중

(입법형식의 선택) 보조금의 지급근거를 조례에서 규정할 때에는 그 대상과 대상 사업을 적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원율, 지원금액, 지원 한도 등까지 조례에서 모두 규정할 필요는 없고, 수시로 변경가능한 세부 사항은 탄력적 운영을 위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검토의견 중

질의제목 : 인천광역시 - 법령 및 조례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23조 등 관련)

관련문서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현장대응과-5807(2018. 4. 30.)

1. 질의요지

법령 및 조례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법령 및 조례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상위법령이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법령 및 조례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법령 및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 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18. 3. 13. 의견제시 18-0025 참조)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 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 및 조례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상위법령이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3. 6. 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3. 6. 2.

2. 제안이유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범위 확대함(안 제15조)
 - 1) (현행) 최대 100억원까지 ⇒ (변경) 최대 200억원까지
- 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신설함(안 제19조)
 - 1) 현행: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규정은 기반시설 사업지원과 중복 규정으로 삭제하고 규칙으로 구체화함
 - 2) 신설: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임차료 지원, 대규모 투자지원에 대한 특별규정

다. 이중지원 금지사유 구체화함(안 제38조)

- 1) 예외규정 신설: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받는 경우, 사업장 매입비 용자 지원받는 경우
- 2) 이중지원 금지사유 추가: 국가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으로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대상 발생시 확보예정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5. 4. ~ 5. 2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지역산업의 육성·지원과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해당 조례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종지원 금지 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을 신설하였음.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 금액확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2) 신설: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나. 관련 조문: 안 제15조·제1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지원대상 및 범위를 예측할 수 없어 비용추계 작성 이 어려움, 지원대상 발생 시 예산 확보예정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이 정 희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 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 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 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 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 30.] [일부개정 2023-03-30, 조례 제5359호]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의3(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1. 제6조의2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 매입 용자 지원을 받는 경우
-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3. 30.] [일부개정 2023-03-30, 규칙 제3340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 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 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 4.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과건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과건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 5.~15. (생략)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②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3.3.30.>

제5조(입지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고용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0명을 초과한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3.30.>

제8조(설비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ICT 기업·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3.30.>

제9조(이전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이전하는 설비가액의 10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3.3.30.>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별표 2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개정 2021.9.30.>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2의3과 같이 하며, 200억원(설비투자비·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9.30., 2023.3.30.>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단,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일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30.]

제18조(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업)

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중개,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개정 2022.4.14.>

3.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에는 지원 비율을 각각 1퍼센트씩 추가로 지원하며, 이전 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별표 2의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9조(기금융자 절차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용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

1. 용자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2. 용자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과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과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용자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용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자의 지원 요건 및 기준은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의 접근성, 집적도, 인력수급, 부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며,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이하 “운용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용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표 4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하여 총점이 5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2.5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평균매출액,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총자산 증가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를 일컫는다) 평가 점수의 합이 35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27.5점) 이상인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

실을 용자를 신청한 시장·군수 및 운용 규정에 따라 기금 용자 업무를 위탁받은 취급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⑤ 용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 ① 도지사는 보조금 또는 용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가 기업에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와 용자금 상환 등을 위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담보 확보 수단은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용자금의 상환을 위한 담보 확보는 운용 규정을 따른다.

⑤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금 또는 용자금의 지원대상은 도 또는 시·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시·군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바. 한자를 같이 쓰기

정비기준

• 한자 병기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다. 문맥상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동음이의어가 있는 등의 경우에만 한자를 병기한다.

한글표기만으로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

• 한자 병기는 법령에서 해당 용어가 맨 처음 나오는 곳에서 한 번만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여러 번 할 수 있다.

차. 굳어진 용어는 그대로 쓰기

정비기준

• 쉬운 말로 바꿀 경우 그 법적 의미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굳이 순화하지 않고

중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 해당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면 괄호에 한자를 함께 쓴다.

개의(開議)하다

- ‘개의(開議)’는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다’의 뜻이지만 단순히 구성원이 모여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사정족수(의사 진행에 필요한 구성원

의 출석 인원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회의를 시작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회의 용어이므로 '시작하다'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다.

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의2제4항)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 자원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3. 6. 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3. 6. 2.

2. 제안이유

-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을 조속히 완료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방안 필요
- 승강기기업체 유치를 통한 승강기산업 집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기업에 특별지원 필요('23.4.18. 주례회의 보고 (주)대명엘리베이터 지원)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의 미분양 된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 하는 경우(단, 기존 분양 필지 및 공장 매입하는 경우 특별지원 제외)

* 산업시설용지 33필지(192,549.5m²) 중 미분양 9필지(39,609.2m²)

- 2023년 4월 이후 거창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거창승강기 베스트밸리에 투자하는 거창군 외 소재하는 승강기기업체

나. 지원계획

- 지원조건: 총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상시고용 10명 이상
-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방안	비 고
시설보조금	시설투자금액의 10% 지원	지원한도 10억 원
이전보조금	이전시설가액의 10% 지원	”

※ 기타보조금: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적용

- 지원예정시기: 투자완료 후 지원

4. 관련법규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7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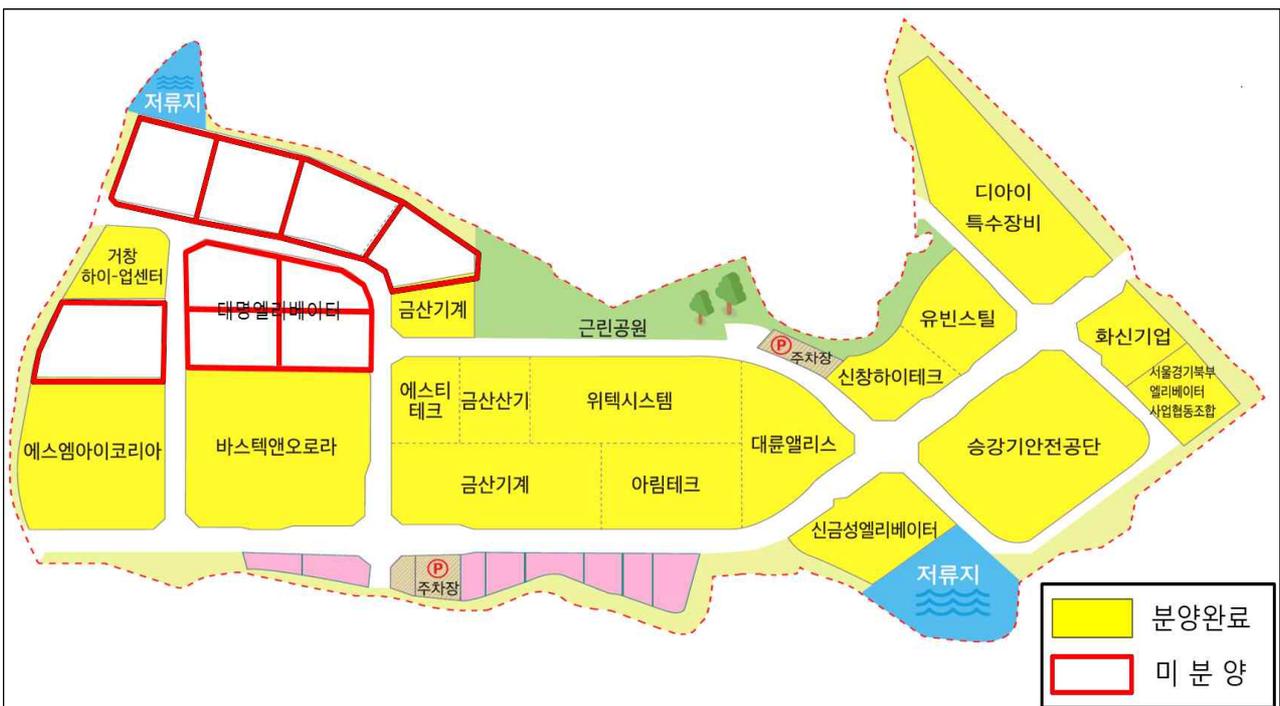
붙임1

특별지원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 현황도



5. 검토의견

- 해당 동의안은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의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 (9필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 2023년 4월 이후 거창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거창승강기 베스트밸리에 투자하는 거창군 외 소재하는 승강기 기업체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동의내용으로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시설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2퍼센트 범위, 기업당 최고 2억원 한도로 정하고 있으나 ⇒ 10억원 한도내에서 시설투자금액의 10% 지원과
- 제8조에서 정한 5억원을 초과하여 이전하는 시설가액의 3퍼센트 범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하는 이전보조금을 ⇒ 10억원 한도 내에서 이전시설가액의 10%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승강기베스트밸리 내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을 조속히 완료하고 승강기산업 집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3. 6. 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3. 6. 2.

2. 제안이유

- 거창군 문화시설 등과 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또는 행사의 장소에 방문하는 군민과 방문객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할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문화체육활동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순환버스 운영, 노선 및 운행범위, 이용대상자, 목적 외 운행 금지를 정함(안 제3조~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순환버스 운영사업 발생 시 예산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및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5. 1. ~ 5.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입법건설팅: 전부반영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5호에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에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조례는 거창군 문화시설 등과 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또는 행사의 장소에 방문하는 군민과 방문객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할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순환버스 운영, 노선 및 운행범위, 이용대상자, 목적외 운행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순환버스 운영 또는 위탁

나. 관련 조문: 안 제3조

2. 미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 제2호

3. 미침부 사유: 순환버스 운영사업 시행 시 시행부서에서 예산 확보예정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조 호 경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 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타법개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80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관광기본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3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운용자료

V. 금품 기타 이익 제공행위

행위유형별 사례예시

7. 차량지원 등 교통편의 제공

(4) 지역축제 관람객에게 교통편의 제공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가 축제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됨.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3. 6. 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3. 6. 2.

2. 제안이유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
-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명: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 나. 위치: 거창읍 수남로 2193-40(장팔리 7)
- 다. 주요시설

구 분	전수회관		체험관1	체험관2	체험관3
	지하 1	지상 1			
951.6㎡	141.6㎡	679.5㎡	57.6㎡	40.5㎡	32.4㎡

- 라. 위탁대상 사무

-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무형문화재 교육 회원 관리 및 체험활동 보조
- 전수관 시설물 관리 위탁 및 사용료 관리
- 마. 위탁기간: 3년 이내(2023.12.19. ~ 2026.12.18.)
- 바. 수탁자(단체): 공개모집
- 사.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 현재 민간위탁운영현황
 - 수탁단체: (사)향토민속보존협의회
 - 위탁기간: 2020.12.19. ~ 2023.12.18.(3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8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나. 그간 추진현황

-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23. 5월

다. 향후계획

- 수탁자(단체) 모집공고: 2023. 8월 중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단체 결정: 2023. 9~10월 중
- 위·수탁계약 체결: 2023. 11월 중

라. 위탁운영 계획: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해당 동의안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의 민간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전수관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관리, 무형문화재 교육 회원 관리 및 체험활동 보조이며,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연간 1억 3천만원 정도 위탁금을 지원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 「문화재보호법」 제8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하지만,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군수가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군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개모집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위탁 계획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의 민간위탁기간이 2023. 12. 18.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위탁 추진계획입니다.

I 전수교육관 운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8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위탁(이하 “운영위탁” 이라한다)할 수 있다.

II 기본 현황

- 시설명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 위치 : 거창읍 수남로 2193-40(장팔리 7)
- 인력현황

직 위	인 원	직 무	비 고
이사장	1명	대표(상근)	
사무국장	1명	총괄.기획업무	
직원	1명	실무	

- 시설현황

구분	전수회관		체험관 1	체험관 2	체험관 3
	지하 1	지상 1			
951.6㎡	141.6㎡	679.5㎡	57.6㎡	40.5㎡	32.4㎡

Ⅲ 위탁 현황

- 위탁기간 : 2020. 12. 19. ~ 2023. 12. 18.(3년)
 - ※ 최초 위탁기간 : 2011. 12. 19. ~ 2014. 12. 18.
- 위탁단체 : (사)향토민속보존협의회 / 이사장 박종섭
- 민간위탁금 지원현황

(단위: 천원)

전수관 운영	2023년	2022년	2021년	비고
계	136,269	124,800	116,548	
인건비(3명)	108,100	103,300	95,840	환경관리일용 (1명)
관리비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28,169	21,500	20,708	

Ⅳ 위탁운영 계획(안)

- 위탁기간 : 위·수탁협약일로부터 3년
 - 2023. 12. 19. ~ 2026. 12. 18.
- 위탁대상 업무
 -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무형문화재 교육 회원관리 및 체험활동 보조
 - 무형문화재 홍보
 - 전수교육관 시설물 관리 위탁 및 사용료 관리
- 수탁단체 : 공개모집
- 위탁조건
 -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을 적극 활용하여 무형문화재 홍보
 - 전수교육관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위탁 비용으로 사용
 - 민간위탁금 정산보고는 분기별로 하며 관리물품 현황은 매년 보고
- 선정기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검토하여 선정

V**향후 추진계획**

- 거창군의회 동의안 제출 : 2023. 5월 중.
- 수탁단체 모집 공고 : 2023. 8월 중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 2023. 9~10월 중
- 운영관리 위탁 협약 체결 : 2023. 11월 중

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3. 6. 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3. 6. 2.

2. 제안이유

- 초고령 사회 속에서 기존의 노인복지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기본이념,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
(안 제1조~제5조)
-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6조·제7조)
- 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정함(안 제8조~제16조)
- 라. 위원회를 정함(안 제17조~제25조)
- 마. 모니터단을 정함(안 제26조~제2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2) 「노인복지법」 제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2023년 예산 5천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4. 26. ~ 5.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8조)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노인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8조제1항에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례는 거창군을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또한, 생활환경 편의증진,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건강증진 등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사업 추진에 연 1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3년 마다 재인증을 위한 연구용역비 50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도 자치단체의 노인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등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사업 시행 등
- 나. 관련조문: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6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세출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군비	50	10	10	50	10	130

3. 향후 계획

- 가.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사업 추진을 위한 2024년 본예산 편성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1. 2023년: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50백만원
- 2. 2024년~2025년: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사업 추진 등 10백만원
- 3. 2026년: 고령친화도시 재인증 연구용역 및 기반사업 추진 50백만원
- 4. 2027년: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사업 추진 등 10백만원

작성자 행복나눔과장 신 동 범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2. 6. 15.] [법률 제18580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

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8조(경제와 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

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기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지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지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건강진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범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거창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필요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총괄부서와 성비규정준수 담당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은 최대 4개 위원회까지 위촉할 수 있고, 같은 위원회에서는 최대 3회까지 연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때 제8조 각 호의 해촉 사유와 제11조의 청렴서약서 제출에 대하여 위촉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3. 6. 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3. 6. 2.

2. 제안이유

- 치매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거창군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노인요양시설을 신축(2023. 12 준공 예정)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위치를 정함(안 제2조)
- 다. 위탁 운영을 정함(안 제3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35조, 「지방자치법」 제161조
- 나.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 800백만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3. 4. 26. ~ 5. 1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해당 조례는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인 ‘공립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노인요양시설의 위치는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97’로 하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장비보강과 정상화 운영 시까지 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노인복지법」 제35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공립 노인요양시설 운영

나. 관련조문: 설치 및 위치(안 제2조), 위탁 운영(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국비	50	-	-	-	-	50
도비	35	-	-	-	-	35
군비	715	200	-	-	-	915

※ 법령에 따른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지원사업은 제외

3. 관련 의견

공립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운영을 위한 장비보강 사업비 편성 및 시설 개원(2024. 3.) 후 정상화 운영(정원 100명 입소) 이전까지 운영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2023년: 공립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800백만원

나. 2024년: 시설 운영비 일시 지원 200백만원

작성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 관련법령 발췌

□ 「노인복지법」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2011. 6. 7.>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보건복지부령 제919호, 2022. 11. 22., 일부개정]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2. 삭제 <2011. 12. 8.>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① 삭제 <2008. 1. 28.>

②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입소자에 대하여는 1년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⑤제18조제1항제1호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시설에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

⑥제15조제7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의4에 따른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⑧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

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삭제 <2019. 7. 5.>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삭제 <2011. 12. 8.>

제23조(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거나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자를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킬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시설의 장 및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8. 3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며, 그 밖에 연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을 16명 이하로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 (1)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2)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춰야 한다.
-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입소자가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 (4)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절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 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 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 (3) 및 (4)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1) 사용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전순위 권리자 및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 (2)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일 것
- (3)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춘 것
- (4)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다) 무단 양도(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

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 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 (1) 보증내용: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 (2) 보증가입금액: 입소보증금 합계의 50퍼센트 이상
- (3) 보증가입기간: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 시까지
- (4) 보증가입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 (5) 보험금 수령방법: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시설별	구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피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	○	○	○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			○	

비고

1.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3.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가.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 나.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 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간이욕실(세면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다만, 침실마다 화장실과 간이욕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가.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2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다.
 - 나.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4. 설비기준

가. 침실

- (1) 독신용·합숙용·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다.
-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해야 한다.
- (3)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가형: 1인실 9.9m² 이상, 2인실 16.5m² 이상, 3인실 23.1m² 이상, 4인실 29.7m² 이상

(나) 나형: 1인실 9.9m² 이상, 다인실 1명당 6.6m² 이상

(4)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여야 한다.

(5)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7)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9) 침실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고,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한다.

(10) 노인들이 자유롭게 침대에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11)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2)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실

(1)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은 소재여야 한다.

(2)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편리하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해야 한다.

(3) 급탕을 자동 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프로그램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물리(작업)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그 밖의 시설

(1)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해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해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바닥재는 부드럽고 미끄럽지 않은 소재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에 있는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 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또는 계약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 사	물리치료 사 또는 작업치료 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입 소 자 30 명 이 상	1명	1명 (입소 자 50명 이 상 인 경 우 로 한 정 함)	1명 (입소 자 100명 초 과 할 때 마 다 1명 추 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 과 할 때 마 다 1명 추 가)	입소자 2.3명당 1명 (차 배 안 급 실 은 2명 당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 상 인 경 우 로 한 정 함)	1명 (1회 급 식 인 원 이 50명 이 상 인 경 우 로 한 정 함)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 과 할 때 마 다 1명 추 가)	1명 (입소자 50명 이 상 인 경 우 로 한 정 함)
입 소 자 30 명 미 만 10 명 이 상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3명당 1명 (차 배 안 급 실 은 2명 당 1명)			1명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차 배 안 급 실 은 2.5명 당 1명)					

비고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해야 한다.
3.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계약의사는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포함한다.
4.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5.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

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7.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9.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10.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6. 30.>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

1. 건강관리

-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의 질환과 관련한 전문의로서의 계약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계약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고, 매월 입소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 바.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급식위생관리

-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 나. 전염성질환, 고름형성 상처 등이 있는 사람은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
-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먹는물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3)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0)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4.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가. 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회 계

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기타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6.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바.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사.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

아.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관계질의서류

자.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차. 연계의료시설과의 제휴계약서

카. 계약의사 근무상황부(계약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시설에서의 기거자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침실 또는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기타 직원 중 1인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시설 안에서는 입소자 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8. 사업의 실시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요양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연령·성별·성격·생활력·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입소자와 면담하거나 관찰·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유지하여 보호의 정도에 따라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장이 생활지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입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사무원·조리원·위생원·영양사·관리인을 제외한다)가 치매 및 중풍환자의 간병요령 등 치매환자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시설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업 기 준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교양·오락설비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되,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는 입소자 보호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별표 4 제6호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 및 근무방식 등에 따른 세부적인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라)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유의하여야 하며 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를 위하여 진료기관을 정하는 등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거동이 불가능한 외상노인의 욕창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치매노인은 치매의 정도에 따라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사.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프로그램관리자의 지도 하에 치매노인의 기능 유지, 악화 방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8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히. (생략)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7. (생략)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89호, 2022. 6. 22., 일부개정]

-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3. 6. 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3. 6. 2.

2. 제안이유

- 가. 노인·여성·장애인 통합복지시설인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기간 (2019. 1. 1. ~ 2023. 12. 31.)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 나. 통합복지시설인 거창군 삶의 쉼터의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갖춘 법인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 다. 이에 대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m ²)		시설구성(m ²)	
		대지	연면적	노인·여성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거창군 삶의 쉼터	거창읍 거안로 126-41	15,057 m ²	5,508.99 m ²	3,009.31 m ²	2,499.68 m ²

나. 사업내용: 거창군 삶의 쉼터 운영

다. 위탁대상 사무

○ 시설: 거창군 삶의 쉼터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 운영: 노인과 여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라. 위탁기간: 2024. 1. 1. ~ 2028. 12. 31.(5년)

마. 수탁자격: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바.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사. 소요예산

○ 시설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예산범위 내에서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인건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운영비: 전년도 운영비 계상분 적용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거창군 삶의 쉼터는 노인·여성·장애인을 위한 통합복지시설로 전문적 사업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을 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및 지역의 노인·여성·장애인 복지증진에 기하고자 함

○ 지난 2008년 개관이후 10년 이상 위탁 운영한 결과 시설평가에서 최우수 복지관으로 선정되는 등 전문성 있는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였기에 통합복지시설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위탁운영 하고자 함

나.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조례」 제6조

다. 향후계획

- 2023. 8. 11. ~ 9. 1. : 운영 수탁법인 모집공고 및 접수
- 2023. 9월초: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3. 9월중: 수탁자 심사결정 및 통지(고득점자 선정)
- 2023. 9월말: 위·수탁 운영관리 협약 체결

5. 검토의견

- 해당 동의안은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대상 사무는 시설관리와 노인·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이며, 위탁금은 23억 8천만원 정도 소요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제2항에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규정 함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3. 6. 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3. 6. 2.

2. 제안이유

- 가. 우리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2023년 12월 준공 예정되어 있음
- 나. 치매노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노인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갖춘 법인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 다. 이에 대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동의(승인)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시설의 운영을 민간 위탁함을 동의(승인) 받고자 함

나.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다. 사업개요

- 위탁시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 위 치: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97
- 시설규모: 연면적 2,930㎡(지하1층, 지상2층)
 - 입소정원 100명 / 치매전담실 2실
- 필요인력: 61명(요양보호사 45, 기타 운영인력 16명)
- 운영방식: 민간위탁 운영
- 시설현황

구분	시설구분	면적(㎡)	주요시설
계		2,930.47	
지하층	설비시설	359.44	발전기실,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지상1층	소계	1,797.58	
	관리시설	340.45	사무실, 원장실, 자원봉사실, 면회실, 시설관리실
	치매전담실	416.72	2실(12인x2실-24인)
	요양시설	1,040.41	10실(4인x9실, 특실x1실-37인), 공동거실, 프로그램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식당, 요양보호사실
지상2층	요양시설	773.45	10실(4인x10실-40인), 공동거실, 목욕실, 식당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있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인력에 의한 고품질의 공공노인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법인 위탁 시 탄력적, 효율적 시설운영으로 군 재정부담경감이 가능하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 노인복지 및 가족부담 경감에 기여

라. 시설운영(안)

○ 운영예산: 연2,649,900천원 *독립채산제로 운영(100인 입소 시 예산)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군 재정지원 불필요)

단, 개원이후 운영 정상화 이전(정원 충족) 운영비 지원 필요

○ 연간 예상 수입·지출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합계	2,649,900	합계	2,649,900
입소자부담(20%)	529,980	인 건 비(80%)	2,119,920
요양급여(80%)	2,119,920	운 영 비(20%)	529,980

☞ 산출근거 : 100명 × 72,600원 × 365일 = 2,649,900천원

※ 산출근거 : 건강보험공단 자료<장기요양 2등급 기준>

※ 운영 수익금 중 일부를 시설노후 대비 개보수 비용으로 매월 적립

○ 입소정원: 100명(일반 76명, 치매전담 24명)

○ 배치인력: 61명

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사(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61명	1명	1명	1명	4명	1명	45명	1명	1명	4명	1명	1명

라. 민간위탁 내용

○ 위탁사무 :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 요양시설 보호대상 노인성질환, 중증 치매 노인 등 입소보호

- 노인성질환, 치매노인에 대한 상담, 가족지원, 의료·사회재활 등

프로그램 운용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위·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수탁자격 :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이 주 목적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향후 추진일정(안)

- 가. 2023. 7월 ~ 8월: 운영 수탁법인 모집공고 및 접수
- 나. 2023. 8월 ~ 9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
- 다. 2023. 9월: 심사결정 및 통지(고득점자 선정)
- 라. 2023. 9월: 위·수탁 운영관리 협약 체결
- 마. 2023. 12월: 시설 준공

붙임 관련사진 1부.

붙임1

관련사진

□ 현장사진(23.5.17. 기준)



□ 조감도



□ 평면도(좌1층/우2층)



5. 검토의견

- 해당 동의안은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 요양시설’을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위탁 내용은 시설운영·관리와 입소자 보호, 각종 프로그램 운용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수탁자가 정한 사항으로 연간 26억 4천만원 정도의 운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독립 재산제로 운영할 계획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법령위반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음.

장애인일자리사업(도자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3. 6. 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3. 6. 2.

2. 제안이유

- 가. 기 위탁 추진 중인 장애인일자리(도자체사업) 위탁 기간 만료 예정
※ 위탁 추진 기간: 2021. 1. 1. ~ 2023. 12. 31.
- 나.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탁기관 시설·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 대상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도자체 사업 및 군비추가분)
 - 도자체사업과 군비 추가부분에 한하여 위탁 운영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복지형) 사업내용 준용

나. 위탁 참여인원: 12명(도 자체사업 계획에 따라 인원 변동 가능)

다. 위탁사무

- 장애인일자리(도자체) 사업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계도 업무 장애인일자리 업무 수행
- 일자리 참여자 모집·선발·교육·훈련·사후 관리 등 업무 수행
- 참여자 근태관리 및 인건비 지급

라.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마. 위탁방법: 공개모집

바. 수탁자격: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장애인일자리(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 민간단체(장애인 단체 등)

바.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직접 운영 시 일자리 참여자 12명(예정)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의 효율적 추진
 - 민원 발생이 많은 사업의 특성상 위·수탁기관 역할 분담을 통한 전문적인 관리 필요
- ⇒ 위탁기관(거창군): 사업총괄, 과태료 부과 상습불법주차구역 관리 등
- 수탁기관 장애인시설 · 단체 운영 활성화 도모

나.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p.71
 - 복지일자리(참여형):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사업 수행가능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다. 향후계획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2023. 6월 정례회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2023. 11월
- 위·수탁 협약체결: 2023. 12월 중

라. 소요예산(2023년 기준): 82,478천원(도비 8,118, 군비 74,360)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경비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복지형)지침 준용에 따라 사업비 매년 변동

마. 위탁운영계획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해당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위탁하는 내용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계도로 참여자의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연간 8천 2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됨.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4호 군 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자치사무이므로 군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함.

-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인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서’에 따르면 위탁협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장애인일자리지원(도자체 사업) 위탁 추진계획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일자리를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으로 장애인을 위한 공간임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준법의식 고취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 3년간
- 추진방법: 민간위탁(공모)
- 위탁 참여인원: 12명(도자체 4, 군비추가 8) / '23년 기준
 - ※ 도자체 사업계획에 따른 인원 변동 가능
- 위탁내용: 장애인일자리 사업 중 도자체사업과 군비 추가부분에 한하여 위탁 운영
- 사업내용: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계도
- 사업비: 82,478천원(도비 8,118, 군비 74,360) / '23년 기준
 - ※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복지형)지침 준용에 따라 사업비 매년 변동
- 수탁자격: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장애인일자리(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 민간단체(장애인 단체 등)
- 그 간 위탁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수탁기관	위탁기간	비고
장애인일자리 (도자체사업)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계도	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부	2021.1.1. ~ 2023.12.31	



근무조건

- 근로내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계도
- 근로조건 및 보수(보건복지부 복지일자리사업과 동일 지원) / '23년 기준
 - 근무시간: 주 14시간이내(월 56시간 이내, 1일 5시간이내)
 - 월보수액: 월 538,720원(퇴직금 없음)
 - 가입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

○ 지원기준: 1인당 월538,720원, 운영비 월 23,690원

※ 매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사업 내용 준용

⇒ 수탁기관 : 일자리 참여자 근태관리, 급여지급, 불법주차 계도 등

○ 일자리 참여사진



위탁 추진계획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2023. 6월 정례회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2023. 11월
- 위·수탁 협약체결: 2023. 12월 중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직접 운영 시 일자리 참여자 12명(예정)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의 효율적 추진
 - 민원 발생이 많은 사업의 특성상 위·수탁기관 역할 분담을 통한 전문적인 관리 필요
- ⇒ 위탁기관(거창군): 사업총괄, 과태료 부과 상습불법주차구역 관리 등
- 수탁기관 장애인시설 · 단체 운영 활성화 도모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3. 6. 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3. 6. 2.

2. 제안이유

- 가. 기 위탁 추진 중인 위탁 기간 만료 예정

※ 위탁 추진 기간: 2022. 1. 1. ~ 2023. 12. 31.

- 나.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개인위생 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장애인 이동 목욕차량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거창군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 나. 사업량 : 목욕 차량 1대, 이용자와 차량 운행 관리

다. 위탁대상 사무

- 목욕차량 위탁운영(1대)
- 위탁차량 관리와 차량운행 업무 등 사무관리
- 목욕차량 이용자 선정 등 관리

라.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 3년

마. 위탁방법: 현 수탁기관 재위탁 / 거창군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
(관장 김경표)

바. 그간 운영상황

- 수탁기관: 거창군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
- 위탁기간: 2022. 1. 1. ~ 2023. 12. 31.
- 위탁차량

차 종	규 격	차량번호	연 식	비 고
이동목욕차	내장탑차	99부4930	2021	※ 2021. 7. 차량 교체

4. 참고사항

가. 재위탁 사유

-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을 받지 못하는 불편 어르신들에게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위생관리와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목욕차량의 운영이 필요함
- 매년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응답이 98%이상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음
- 위탁금은 대부분이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현 수탁기관(거창군삶의쉼터)의 후원금으로

운영 재료비의 부족분을 충당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을 수탁기관의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무료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현 수탁기관처럼 기관의 자체 후원금과 인력을 충당하며 수행할 기관이 없는 실정으로, 재위탁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나. 관계법령: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다. 향후일정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2023. 6월 정례회
- 재위탁 신청서 접수: 2023. 9월 중
- 재위탁 적격여부 심의: 2023. 10월 중
- 재협약 체결: 2023. 12월 중

라. 소요예산

- 위탁운영비: 연간 36,000천원 /2023년 기준
 - 최저인건비 상승 등 요인 발생시 위탁금 인상 가능

마. 위탁운영 계획안: 붙임 참조

5. 검토의견

- 해당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에 대해 향후 3년간 재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 위탁내용으로는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과 연계한 이동목욕 서비스와 대상자 1인에게 월 2회 정기적 방문 목욕서비스 실시 등으로 연간 3천 6백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됨.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음.

장애인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 위탁 계획

-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의 목욕에 대한 욕구해소
- 대상자의 위생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통해 건강한 가족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와의 접근성을 확보함

위탁개요

- 추진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사업명 : 거창군장애인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사업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3년간
- 위탁내역 : 차량 1대

차종	규격	차량번호	연식	비고
이동목욕차	내장탑차	99부4930	2021	※2021.7. 차량교체

- 추진방법 : 재협약
- 사업대상 : 거창군 거주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
- 사업내용
 -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이동목욕서비스 실시
 - 대상자 1인에게 월 2회 정기적 방문 목욕 서비스 실시
 - 체온, 혈압 확인 등 기본 건강상태 확인 등
- 사업비 : 36,000천원(군비 36,000) / '23년 기준

그간 추진 사항

- 수탁기관 : 거창군삶의쉼터(장애인복지관)
- 그간 위탁 내용
 - 2012. 3. 1.~ 2014. 2. 28 : 공모
 - 2014. 3. 1. ~ 2016. 2. 28 : 재위탁
 - 2016. 3. 1. ~ 2019. 2. 28 : 재위탁
 - 2019. 3. 1. ~ 2021. 12. 31 : 재위탁
 - 2022. 1. 1. ~ 2023. 12. 31. : 재위탁

- 운영인력 : 13명(전담인력 1명 / 노인일자리사업 12명)
- 이 용 료 : 무료
- 신청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장기요양 목욕서비스 미대상자
- 신청방법 : 본인(가족 포함)이 삶의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
- 연도별 추진사항

(단위 : 명,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비고
연간 이용인원	648	220	645	638	누적인원
예산지원	30,000	30,000	34,000	35,000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단축운영으로 서비스 이용자수 및 횟수 감소

향후 추진계획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3. 6월 정례회
- 재위탁 신청서 접수 : 2023. 9월 중
- 재위탁 적격여부 심의 : 2023. 10월 중
- 재협약 체결 : 2023. 12월 중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의 개인위생과 심신의 건강증진
- 장애인 돌봄에 대한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가족 유대관계 강화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3. 6. 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3. 6. 2.

2. 제안이유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하여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명: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 나. 위탁대상 사무: 여성결혼이민자 채용 및 관리
 - 여성결혼이민자 상시고용: 연간 5~ 10명
 - 근무조건: 근로기준법 준수하여 근로계약 체결
 - 근무내용: 결혼이주여성 능력에 따라 다양한 업무 수행
 - 월 급여: 1인당 월 근로임금 50만원 이내 채용 장려금 지급 (위탁금), 그 외 임금은 수탁기관 부담

다. 수탁기관 가격기준: 4대 보험 가입하는 기업체 또는 법인

- 연중 5~10명 정도의 여성결혼이민자 상시채용과 관리가 가능한 기관

라. 위탁방법: 공개모집

마.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법인 선정 공고 및 접수: 2023년 11월
- 민간위탁심의위원 구성: 2023년 12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정: 2023년 12월
- 위·수탁협약 체결: 2023년 12월
- 위탁업무 개시: 2024년 1월
- 소요예산: 연간 30,000천원(위탁운영비)

5. 검토의견

- 「다문화가족법」 제16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해당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위탁 만료되는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위탁대상 사무는 여성결혼이민자 채용 및 관리이며, 연간 5~10명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상시 고용할 수 있는 기업체 또는 법인이 수탁기관이 될 수 있음.

[붙임 1]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위탁계획

민간위탁 중인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이 2023.12.31.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위탁기관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능력과 전문성 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II 위탁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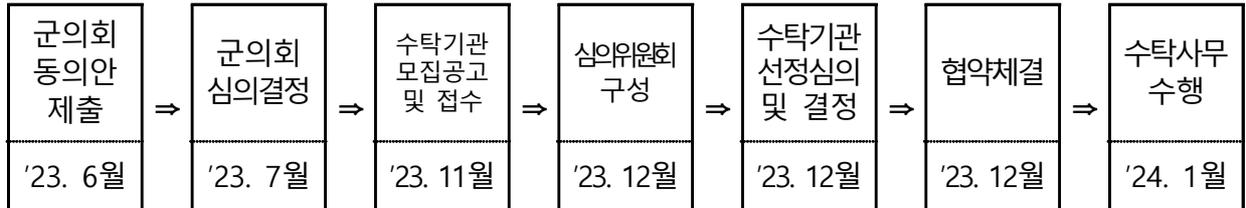
- 위탁사무: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 현 위탁체 현황 (단위 : 천원)

수탁기관	대 표	주 소	업 종	비고
거창한거창조합 공동사업법인	김종경	거창읍 거함대로 3372	농산물 유통	

- ※ 최초 운영: 2011. 3. 2.(화)
- 위탁기간: 2022. 2. 1.(화) ~ 2023. 12. 31.(토) / 1년 10개월
- 운영방법: 여성결혼이민자 5~10명을 채용, 근로임금 50%이내를 위탁금으로 보조, 그 외 임금은 수탁기관 부담
- 여성결혼이민자 고용현황

고용분야	고용현황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과선별 작업	9명	9명	6명	6명	6명	

- 위탁사유: 위탁기간 만료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 추진절차



Ⅲ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제출: 2023. 6월중(제271회 정례회)

□ 모집공고

- 공고기간: 2023. 11. 13.(월) ~ 2023. 11. 24.(금) / 12일간
- 접수기간: 2023. 11. 14.(화) ~ 2023. 11. 24.(금) / 11일간
- 공고방법: 군청 홈페이지 등
- 신청자격: 여성결혼이민자 상시고용이 가능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관내 소재 업체 또는 법인(단체)
- 위탁사무: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
 - 여성결혼이민자 공개 채용, 근로계약 체결, 상시고용

□ 심의 위원회 구성 및 개최

- 구성인원: 6명이상 8명 이하 / 위원장 포함
- 심의위원회 개최: 2023. 12월 중
- 선정기준
 -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장비·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등
- 심의결정: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 결정·통보 및 위탁계약 체결

- 계약체결: 2023. 12. 2.(목)
 - 위탁기간: 2024. 1. 1.(월) ~ 2026. 12. 31.(목) / 3년
- 계약방법: 위탁운영 약정서에 따라 계약 체결

IV 행정사항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3. 6월중(제271회 정례회)
- 모집공고 및 접수: 2023. 11. 13.(월) ~ 2023. 11. 24.(수)
- 심사계획 수립 및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2023. 11. 27.(월)한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2023. 12. 7.(목)한
- 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2023. 12. 21.(목)한
- 위탁기관 선정결과 보고: 2023. 12. 27.(수)한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3. 6. 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3. 6. 2.

2.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개정(2023. 3. 28. 시행)으로 정보 파기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령 개정사항, 재기재 등 정비함(안 제1조·제2조·제4조·별표)
- 나. 정보 파기 위반 과태료 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 1) 대상: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은 자
 - 2) 금액: 1차 1천만원, 2차 2천만원, 3차 3천만원
 - 3) 근거: 「지역보건법」 제3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5. 12. ~ 5. 3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해당 조례는 2023년 3월 8일 시행된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정보 파기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정보 파기 위반 과태료 기준을 신설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지역보건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305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법인·시설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법인·시설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28.>

1.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자료
2.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신청, 조사 및 실시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6.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7. 「지방채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8. 「치매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방식,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⑧ 제7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3. 28.>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 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 12. 2.>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